

2025년 「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[ICT GROWTH]」 사업 공모 안내서

2025. 3. 5.

1. 사업 개요

- (사업명)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(ICT GROWTH*)
*브랜드명 : ICT Globalization pROgram for World's Top High-tech startup
- (사업목적)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ICT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, 금융지원(투·융자) 연계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
- (지원규모) 15개사 이내
- (지원대상) 글로벌 역량을 갖춘 ICT 또는 ICT 기반 융복합 분야 중소기업
- (지원기간) 글로벌 진출 지원 1년, 금융지원 연계는 신용보증기금 평가를 거쳐 최대 3년, 창업·벤처 지원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평가를 거쳐 1년

2. 지원 및 연계내용

- 글로벌 진출 지원, 금융지원 연계, 민간투자 연계, 창업벤처 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 종합 지원

글로벌 진출 지원

- 과기정통부 해외거점(KIC 등)을 통한 해외 현지 진출 프로그램 운영(NIPA, 약 3주 소요)
- 해외진출 희망국가 진출전략 지원(GDIN)

민간 투자 연계

- KIF(Korea IT Fund), 벤처기업협회, 벤처캐피탈협회 등 투자설명회 개최
- 액셀러레이터, 대기업 등 잠재 투자자 대상 IR 피칭 참가 지원

금융지원 연계(신용보증기금)

- 운전자금 보증지원 추천
-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추천
- 보증연계투자 추천

창업·벤처 지원 유관기관 연계

- KSM(Krx Startup Market) 등록 추천, M&A 교육 지원(한국거래소)
- 이행보증보험 보증 한도 확대, 보험료 할인(서울보증보험)

[참고] 과기정통부 해외거점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[의무 참여]

(공통 지원) 기업별 체류 지원(이코노미왕복항공·숙박 2인), 현지 비즈니스 매칭 지원

* 해외 현지에서 약 2주간 체류를 통해 현지 프로그램 참여 필요

(KIC 실리콘밸리 - 6월 말 예정)

- 글로벌 기업가 교육, 투자자 및 잠재 고객 확보,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매칭 지원 및 우수기업 현지 POC 매칭 지원

(싱가포르 해외IT지원센터 - 10월 예정)

- 현지 시장 교육, 제품시장 적합성(Product-market fit) 검증,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즈니스 매칭 지원 및 우수기업 현지 POC 매칭 지원

(호치민 해외IT지원센터 - 11월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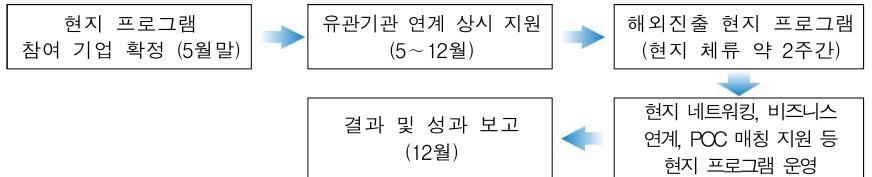
-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PMF 검증, 시장조사 지원을 통한 잠재 고객사 확보

(하노이 해외IT지원센터 - 9월 예정)

- 현지화 세미나, 진출 전략 수립, 법률·회계 지원, 현지 관계자 네트워킹, 투자자 대상 피칭

(한·인도SW상생협력센터 - 10월 예정)

- 법률설립 및 회계 지원, 현지화 및 현지진출 전략 수립, 현지 파트너 확보 지원



※ 선정기업은 국내 프로그램 및 해외거점 현지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(현지에서 약 2주간 운영, C레벨 의사결정자 포함 기업당 2인의 참여를 지원)

※ 해외 현지 프로그램에 2인(정부 지원) 이외 자부담을 통하여 추가 참여 가능

※ 현지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, 지원 프로그램 변경 가능

3.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

□ 신청 자격

- ICT 또는 ICT 기반의 융·복합 분야를 영위하고,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
지원대상 요건 (* 아래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)

- ① 공고일('25.02.28) 기준으로 법인 설립 후 최근 3년간 국내·외 기관투자자*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
- ② 최근 3개년 매출이 연평균 20% 이상 증가 기업 (엑셀함수 GEOMEAN 활용 계산)

* 국내·외 기관투자자 기준은 '불임1' 참고

□ 신청 제외대상

- 신청한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

< 제외대상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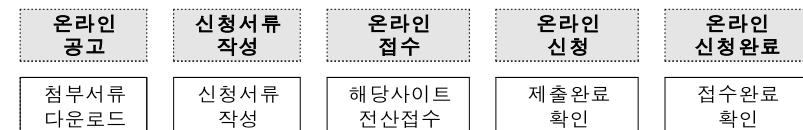
- ① 대기업 즉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고,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하는 회사
-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 - * 단,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
-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 - * 단, 협약 전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중소벤처기업부,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유사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 또는 기업
 - * 단,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 가능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
- ⑥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※ 신청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,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,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실시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(신청방법)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nipa.kr) 온라인 접수
 - 공고 안내 : 홈페이지 내 '사업공고' 메뉴에서 해당공고 신청서 양식 관련 해당서류 다운로드
 - 신청 접수 : 홈페이지 내 '전산접수' 메뉴(하단위치)에서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및 사업수행계획서·기타 부속서류 업로드

▣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및 확인사항



- 마감당일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전산접수 완료 요망

* 신청접수 마감기한('25.04.02. 16:00)내 시스템에 최종 접수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고, 마감기한 이후 신청 건은 절대 인정 불가

* 전산접수된 첨부파일은 원도우 환경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, 첨부파일의 오류발생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이 부담

* 온라인 신청접수 매뉴얼(별첨) 참고

○ (제출서류)

제출 서류 목록	비고
▪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(필수)	
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(필수)	
▪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(필수)	
▪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(필수)	
▪ 국세,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부(필수)	
▪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1부(필수)	
▪ 재무제표 원본 1부(필수)	'21년 ~ '24년
▪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,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(필수)	'21년 ~ '24년
▪ 투자유치 내역서, 투자계약서 및 주금납입증명 등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(해당시)	최근 3년
▪ 특허출원사실증명, 특허등록원부 등 특허출원 및 등록 증빙서류(해당시)	

* 필수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제외 조치

* 평가 과정 및 보증심사 과정 중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

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4. 선정 평가 및 절차

□ 선정평가

- (평가방법)** 1차 평가(요건심사, 서면평가), 2차 평가(적격심사, 발표평가)를 거쳐 지원기업 선정

구 분	평 가 내 용
1차 평가	요건 심사 투자 유치액, 매출액, 참여 대상 제외 요건 심사
	서면 평가 기술 우수성, 시장 확대 가능성 등 성장 가능성 심사
2차 평가	적격 심사 보증대상 요건, 신용도,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여부 등
	발표 평가 개별 기업 발표 및 전문가 Q&A를 통한 성장 가능성 평가

- (평가기준)** 글로벌 역량, 기술 및 시장성, 환원계획 등 평가

구 분	배 점	평 가 항 목
기술 및 시장성	기술/비즈니스 모델 우수성	25 비즈니스모델 우수성·혁신성, 기술 차별화, 핵심기술 개발,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등 *ICT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, 성장성, 경쟁력 보유 분야
	고성장 가능성	20 경영진 철학 및 역량, 매출 성장 가능성, 진입장벽 해결/구축, 제품 생산기반 우수성, 고객 활성화 지표 등
	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	20 향후 투자유치 및 재원조달 계획과 가능성
글로벌 역량	진출 의지	10 글로벌 시장 진출 전담 인력·조직 보유 여부, 시장 관련 지식 보유 여부 등
	보유 역량	10 경영진·전담인력 글로벌 전문성, 현지 네트워크·파트너사 보유 여부 등
	진출 계획 적정성	10 시장조사 활동, 진출(투자유치)전략 체계성 및 실행 가능성
환원 계획	국내 생태계 환류 의지	5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환류 계획·의지 및 ESG 경영 이행 계획·의지
기점	AI, AX 기업 ICT 수행기업	+1 기점 항목 해당 여부 확인

* 세부 평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- 추진 일정**

- 사업공고 : 2025.03.05.(수) /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
- 접수기간 : 2025.03.05.(수) ~ 2025.04.02.(수,16:00) 까지 (4주간)

구분	1차 평가		2차평가		발 표
	<1단계> 요건심사	<2단계> 서면평가	<1단계> 적격심사	<2단계> 발표평가	
평가	2배수	▶	15개기업 내외		
일정	4월	4월	4월	5월초	5월초

- * (중요) 적격심사는 보증지원 추천을 위해 서면상 예비 검토하는 단계이며, 최종 보증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는 선정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별도 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확정
- * 2024년 K-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결선진출 기업은 요건심사 통과 시 서면평가 면제
- * 지원기업중 AI, AX(AI 활용) 및 ICT R&D 우수 기업은 서면평가에서 1점 기점(최대1점) 부여(총점 100점 기준)

구분	주요내용	배점
AI, AX 분야 기업	AI, 머신러닝, 딥러닝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비즈니스 모델,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AI 기술을 적용한 기업(AX)	1점
국가 ICT R&D 수행 우수기업	ICT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'23년 이후에 종료된 국가 ICT R&D 수행 우수기업* 대상 기점 부여 * TRL 5 이상이고, 최종 평가 점수 80점 이상	1점

- * 적격심사중 자료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탈락 가능
- *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5. 의무 이행사항

- (사업 수행)** 사업기간 내 운영기관(NIPA, 신용보증기금)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·작성·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
- (자료 제출)** 지원기업선정 및 금융지원 연계를 위한 현장실사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- * 적격심사 시 자료제출, 인터뷰 등 요구 가능
- (성과관리)** 지원기업은 지원종료 후 3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해 K-Global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가입 및 성과 기초자료 제출, 이외 NIPA의 성과분석에 필요한 정보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- * 성과조사서 3년간 제출, 4대보험 가입자 증명 제출 등

6. 관련규정

-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 규정

7. 신용보증 지원 관련 안내사항

- ICT GROWTH 선정기업 중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 제한 기업 및 제한 업종*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지원을 추천함
* 보증 제한 기업 및 제한 업종은 ‘붙임2’ 참고
 - 최종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규모는 ICT GROWTH 기업 선정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 심사 및 평가를 통해 결정됨
 - 보증 승인 시 향후 3년간 지원할 총 보증한도(Credit Line)* 및 각 연차별 누적지원한도**를 설정한 후 각 연차별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연차의 보증 지원 여부가 결정됨
 - * Credit Line 한도 : 3년간 최대 50억원
 - ** 연차별 누적지원한도 : 1차년도는 Credit Line의 60%, 2차년도는 Credit Line의 80%, 3차년도는 Credit Line의 100%
 - 신용보증 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됨
- ※ 허위자료 제출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제재조치(신규 보증 제한, 기존 보증 즉시 회수, 고소·고발, 신용관리정보 등록 등)를 취할 수 있음

8. 문의처

- (사업 전반)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: ☎ 043-931-5557
※ 전산접수 문의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서비스팀 (070-5151-8234)
- (보증 관련) 신용보증기금 스케일업금융센터 혁신융합팀
☎ 02-710-4677, -4678

붙임1

기관투자자의 범위

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
 - (1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
 - (2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
 - (3)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
 - (4)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
 - (5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
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의3 제2항
 - (1) 신기술창업전문회사
 - (2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
 - (3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
 - (4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(5)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(6)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
 - (7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(PEF)
 - (8) 「농림수산식품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
 - (9)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 협력기술지주회사
 - (10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 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
 - (11)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 - (12) 기술보증기금
 - (13)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- (14)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23에 따른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
4.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

불임2**보증 제한 기업 및 제한 업종 [신용보증기금]****□ 보증 제한 기업****■ 보증금지대상기업**

-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으로서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신보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(이하, '채무면탈기업'이라 함)
-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①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등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
 - 나. ①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
 - 다. ①의 기업의 실제경영자

■ 보증제한대상기업

- ① 휴업 중인 기업
- ②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빙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
- ③ 금융회사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
-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(대표자 및 실제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)
- ⑤ '채무면탈기업'의 연대보증인이 기업 및 보증금지대상 ②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
- ⑥ 신보, 기보, 보증재단,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- ⑦ 신보의 중소기업대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 및 구매자인 기업, 신보의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, 녹색보증계정,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, 신보가 팩토링부실처리 후 매출채권의 원금 등을 변제받지 못한 구매기업 및 법률관계·소송 등에 따라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판매기업
-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⑥, ⑦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과점주주인 이사등 또는 업무집행 사원인 무한책임사원
 - 나. ⑥, ⑦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
 - 다. ⑥, ⑦의 기업의 실제경영자
- ⑨ ⑥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기업 및 ⑧의 가~다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기업
- ⑩ 허위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- ⑪ 신보, 기보, 보증재단,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,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, 녹색보증계정, 녹색공정전환보증계정의 보증부실기업(보증부실처리 유보기업 포함)
- ⑫ 보증채무이행기업 및 중소기업대출채권보험계정 대위권 보유기업의 채무관계자 관련기업,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기업으로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기업
- ⑬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한 기업,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

■ 기업규모별 선별지원 대상

- ① 대기업
- ② 중견기업 중 신보 K1~K2등급 기업
- ③ 「은행업 감독규정」 제79조제1항에 따른 계열기업군 소속기업
- ④ 상장 대기업 출자기업 :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기업이 단독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20%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

□ 보증 제한 업종

구 분	세부업종 (제10차 표준산업분류)	예 시
도박 및 게임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C33409) 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•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G46463) 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G47640) 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N76390) 종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J58211, J58212, J58219) 종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(N75999) 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• 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(N75995) 종 경품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판매대행업 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R91113) • 전자게임장 운영업(R91221) 종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• 카지노 운영업(R91242) 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R91249) 	슬롯머신, 룰렛, 주사위, 경마, 릴, 메달게임 등을 카지노 및 성인용 게임장 등에 공급하는 도박, 오락 기구 및 S/W 관련산업
향락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 유흥주점업(I56211) • 무도 유흥주점업(I56212) • 무도장 운영업(R91291) • 마사지업(S96122) 종 안마시술소 	룸싸롱, 접객주점 나이트클럽 댄스홀, 콜라텍
부동산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용 건물 임대업(L68111) •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L68121) • 부동산 투자자문업(L68222) 종 부동산 컨설팅업 	아파트 임대 아파트 분양 기획 부동산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(J59142) • 복권발행 및 판매업(R91241) 종 복권 판매업 •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(S96992) • 그 밖에 위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	비디오방 휴게텔, 전화방